

【논 문】

청대 만주 황실과 벌꿀

—內務府 蜜戶에서 황실의 식탁까지—

이 승 수*

【 차 례 】

- I. 서론
- II. 內務府의 蜜戶
- III. 황실의 벌꿀 소비
- I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청 황실의 벌꿀 생산과 소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기존 연구에서 인삼·동주·모피는 청대 부트하 산업을 대표하는 “만주의 세 보물”로서 정치사·경제사·환경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다루어져 왔으나, 벌꿀은 일용품적 성격과 궁중 생활사적 성격이 강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특히 벌꿀의 생산 주체였던 內務府 蜜戶 집단의 활동과, 황실 내부에서의 소비 양상은 그동안 계통적으로 연구된 바가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벌꿀이 최초 생산지에서 출발하여 황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전면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청 황실의 벌꿀 생산과 소비 구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생산 부문에서는 盛京, 打牲烏拉, 直隸 지역에 설치된 蜜戶 집단의 기원과 편제, 그리고 그들의 貢蜜 활동을 고찰하였다. 이어 소비 부문에서는 복경으로 집결된 벌꿀이 황실 내부에서 家祭와 일상 食飲 두 방면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가경 연간 이후 궁중 연회의 餽餽桌 문화가 확산되면서 황실의 食飲用 벌꿀 소비가 급격히 증가한 양상을 주목하였다.

* 북경대학교 역사학과 박사연구생

본 논문은 벌꿀이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샤머니즘 의례, 궁중 제사, 연향 문화, 의약 체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였음을 보여 준다. 또한 벌꿀이 인삼·동주·모피와 달리 주로 황실 내부에서 직접 소비 되었다는 점에서, 청 황실의 소비문화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기존의 부트하 산업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공백으로 남아 있던 벌꿀의 위치를 밝힘으로써, 청 황실의 재정과 문화적 자원 운영 체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제어: 만주족, 청황실, 벌꿀, 蜜戶, 餽餉桌

I. 서론

자금성 동문 밖에 위치한 청 황실의 샤머니즘 사당인 堂子에서는 매년 음력 4월 초8일에 浴佛祭가 거행되었다. 만주족의 민족 색채와 샤머니즘이 강하게 반영된 당자의 욕불은 다른 불교 문화권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를 지녔다. 예를 들면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대부분 甘酒나 甘露水를 사용해 불상을 씻었지만, 당자의 욕불은 아이신 기오로 씨족의 八家(jakūn boo)에서 각출한 벌꿀을 섞어 만든 꿀물을 불상에 뿌렸다. 『滿洲祭神祭天典禮』는 당자에서 꿀물로 불상을 씻은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황제의 집(dergi boo)’에서 준비하여 가져 온 붉은 벌꿀과 ‘여러 왕들의 집(geren wang ni boo)’에서 보낸 벌꿀을 모두 조금씩 취하여 황색 자기 그릇에 담고 깨끗한 물과 섞는다. …(중략)… 사만(saman: 샤먼)이 부처를 그릇에 모셔 씻은 뒤 깨끗한 솜 위에 부처를 놓고 다시 원래의 옥좌 위에 올린다.¹⁾

1) 『滿洲祭神祭天典禮』 2冊, 「浴佛儀注」. “dergi booci belheme gamaha fulgiyan hibsū, jai geren wang sai booci benjihe hibsū be sasa gemu majige gaifi, suwayan yeherei cara de sindafi bolgo muke kūthūmbi, …(중략)… saman fuchihi be suwayan yeherei cara de solifi oboho manggi, dasame ice kubun tebūfi, an i da soorin de dobombi,”

황제와 팔가의 왕들이²⁾ 집집마다 보내 온 벌꿀이 같은 접시 안에서 녹아 섞이고, 씨족 구성원 가운데 선발한 여성 사면들이 불상을 씻으며 씨족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한 청 황실의 욕불 의식은 만주족 문화에서 벌꿀이 가진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사머니즘 제사에서 벌꿀이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다른 종류의 ‘황실 제사’³⁾에서는 보다 직설적인 방식으로 벌꿀이 사용되었다. 궁궐 안팎에 위치한 황실 소유의 祠廟에서 거행된 크고 작은 황실의 家祭에서는 접시에 담은 꿀을 그대로 접시에 담거나, 꿀을 넣은 糝食과 餠餠, 버터와 꿀을 섞어 만든 乳餅, 과일을 꿀에 절인 蜜餞 등을 제사상에 올려 列聖과 先皇을 공양했다.⁴⁾

황실에서 벌꿀은 의례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했다. 벌꿀은 당시 중국에 널리 보급되어 서민화된 沙糖⁵⁾ 보다 영양이 풍부하고 고급스러운 단맛을 가져 그 자체로 귀한 식재료였지만, 특히 만주족에게 벌꿀이 첨가된 여러 간식들은 ‘고향의 맛’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御膳房에서 요리하는 황제와

2) 본래 당자의 욕불제에는 각 구사의 ‘旗王 버일러’ 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었다. 이후 崇德 원년(1636)에 종실의 봉작 제도를 정비 하면서 ‘여러 郡王과 親王’들이 두루 참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順治 2년(1645)에 다시 ‘多羅郡王 이상의 봉작’이 참가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光緒大清會典事例] 卷1182, 「內務府13·祀典6·堂宇浴佛」; 『世祖章皇帝實錄』 卷15, 순치 2년 4월 8일.)

3) 본고에서 지칭하는 ‘황실 제사’란 오로지 內務府의 인력과 재정에 의거하여 거행된 제사를 가리킨다. 陵寢이나 太廟와 社稷, 天壇과 地壇, 關帝廟 등에서 거행된 ‘국가 전례’와 구별되므로, 황제의 ‘家祭’라고 부를 수 있다. 물론 능침 등에서 거행된 국가 전례에도 황제와 황후를 비롯한 황족들이 제사에 참가했고 내무부의 재정과 인력이 일부 투입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戶部和 禮部の 재정에 근거하고 太常寺와 光祿寺에 의해 주관되므로, 내무부에서 전적으로 주재한 황실 家祭와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본고는 황실의 벌꿀 생산과 소비의 경향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능침이나 종묘, 사직 등 국가 전례에서 사용된 벌꿀의 收支는 서술 범위에서 잠시 제외하기로 한다.

4) 『光緒大清會典事例』 卷1179, 「內務府10·祀典3·奉先殿陳設」; 『光緒大清會典事例』 卷1180 「內務府11·祀典4·壽皇殿規制」; 卷1180, 「內務府11·祀典4·安佑宮」

5) 명 嘉靖년간에 복건 지방에서 白糖의 제조법이 발명됨에 따라 설탕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사치품이나 약품으로 인식되었던 설탕은 청 초기에 이르러 점차 기호식품이 되었고, 청 중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완전히 ‘서민화’ 되었다. (趙國壯, 2020(3), 「論中國糖業經濟的“明清變革”」, 『社會科學輯刊』, 161-174쪽) 19세기에 북경을 방문한 홍대용은 청나라의 설탕 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청나라는) 벌꿀이 매우 귀하여 모두 糖에서 단맛을 얻는다. 손바닥 크기의 沙糖 한 덩어리가 은 한 톨 정도이니 남방에서 생산되는 사탕수수가 매우 풍부한 것을 알 수 있다(『燕記』 ‘飲食’)”.

황후의 아침저녁 식단에는 꿀에 과일을 재어 만든 蜜餞이나 餠餠(떡과 빵류의 총칭)처럼 벌꿀이 들어간 음식이 포함되었고, 크고 작은 여러 궁중 筵宴에서도 벌꿀이 들어간 여러 음식이 제공되었다. 또한 만주족의 의약 문화에서 벌꿀은 보양과 해독의 작용이 있다고 여겨져 약재로도 중요한 기능을 했다. 御藥房에서는 벌꿀 외에도 白蜜, 蜜脾(벌집), 蜜尖(로열 젤리), 煉蜜(생밀을 달여 수분을 제거한 것) 등 각종 부산물을 약재로 구비해 두고 수시로 황실 구성원에게 처방했다.

벌꿀은 人蔘·東珠·貂皮와 함께 청 황실이 만주 지역에서 경영한 부트하[butha, 수렵과 채집의 대표적인 생산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자원의 경제성 측면에서 벌꿀이 가진 함의는 다른 세 품목과 다소 달랐다. 앞의 세 품목은 모두 換價性이 높아, 일부의 수량을 황실에서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물량은 ‘兩淮等六處’의 시장에서 주기적으로 變價하여 은으로 교환했다. 이러한 이유로 조정 내에서 이 세 물품은 “錢糧과 관련된 것(ciyanlıyang de holboburengge)”으로 불렸다.⁶⁾ 반면 벌꿀은 판매용 상품이라기보다는 거의 전액이 황실에서 직접 먹고 마시는데 사용되었다. 때문에 만주인들은 벌꿀을 포함한 여러 만주産 식재료를 가리켜 “황제의 입에 이르는 것(dele angga de isiburengge)”, “황제가 사용하는 것(dele jafarangge)”, “內府에서 사용하는 것(dolo de baitalarangge)” 등으로 표현하곤 했다.⁷⁾ 그러나 황제의 ‘주머니[荷包]’로 들어가는지 ‘입[口味]’으로 들어가는지가 달랐을 뿐, 벌꿀은 다른 세 물자와 마찬가지로 청 황실이 조상 대대로 만주 지역에서 특권을 가지고 생산해 온 귀중한 자원이며, 그러한 이유로 황실 구성원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물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경제성이 강한 蔘·珠·貂는 그동안 “만주의 세 보물”로 여겨지며 이른 시기부터 높은 주목을 받았고, 정치·외교사, 사회·경제사, 변경사, 민족사, 환경사 등 다양한 주제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반면 일용품의 성격이 강한 벌꿀은 정치사나 사회사, 경제사 보다는 궁중 생활사 혹은 문화사와 조금 더 관계가 깊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만주족과 벌꿀 혹은 청 황실과 벌꿀을 전문 주제로 삼은

6) 『黑圖檔-康熙朝』 36冊-371, 강희 58년 7월 29일.

7) 『黑圖檔-康熙朝』 2冊-51, 강희 7년 12월 14일.; 『黑圖檔-雍正朝』 9冊-79, 옹정 3년 6월 27일.

계통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개략적으로 청조의 貢蜜을 다룬 연구는 소수 있었지만, 대체로 청대의 부트하 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인 打牲烏拉의 사례에 한정되었고 지리적으로는 길림 지역에 국한되었다.⁸⁾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하듯이 청 황실의 벌꿀 생산은 打牲烏拉 뿐 아니라 盛京과 直隸 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행해졌으므로 기존 연구에 공백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더욱이 각지에서 생산된 벌꿀이 황실로 들어온 이후 황실 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만큼 소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더욱 거론된 바가 없다.

이에 본고는 기존 연구의 공백을 보충하여, 벌꿀이 최초 생산지로부터 출발하여 황실 구성원들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벌꿀의 생산과 소비 과정 전반을 훑어보고, 이를 통해 황실의 벌꿀 생산과 소비는 시대별로 어떠한 변화가 생겨났는지, 또한 그러한 변화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생산자”와 “소비자” 두 부문으로 나누어 본문을 구성했다. 먼저 2장에서는 생산자, 즉 황실에서 사용한 벌꿀의 생산을 담당한 기층 집단인 內務府의 ‘蜜戶’ 집단에 대해 서술했다. 밀호를 지역에 따라 성경의 밀호와 打牲烏拉의 밀호, 직예의 밀호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 밀호의 편성 기원과 그들의 貢蜜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소비자에 초점을 두어 벌꿀이 북경에 도착한 이후 황실에서 어떻게 소비되었는지를 다루었다. 여기서는 황실의 벌꿀 소비를 ‘제사 지내기(家祭)’와 ‘먹고 마시기(食飲)’의 두 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소비 패턴의 변화를 서술했으며, 특히 가경기 이후로 황실의 食飲用 벌꿀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궁중 연회의 餽餼桌(efen dere) 문화를 소개했다.

8) 佟冬 主編, 2006, 『中國東北史』, 吉林文史出版社, 1686-1687쪽.; 歷延芳, 1995, 「《打牲烏拉志典全書》與清朝貢蜜」, 『養蜂科技』, 33-34쪽.; 王守剛, 1993(3), 「滿族人的采蜜習俗」, 『蜂蜜雜誌』, 24-25쪽.; 葛鳳晨·陳東海, 1993(5), 「十七世紀中國皇家貢蜜生產基地」, 『中國養蜂』, 28-30쪽.; 李新宇, 2021, 「清代打牲烏拉官營采捕研究」, 吉林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123-130쪽.

II. 內務府의 蜜戶

청조 치하 億兆蒼生の 旗·民 人丁(haha) 중에는 국가가 아니라 황제에게 인신이 예속되어, 국가(戶部)에 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황실(內務府)에 地租(usin i alban) 또는 夫役(beye i alban)을 납부하는 신분 계층이 존재했다. 이들은 집단 내부에서도 팔기에 편제된 시점이나 황실에 예속된 경위, 佐領(niru) 또는 管領(hontoho)으로의 편제 여부, 민족, 직업, 거주지 등이 모두 제각기 달라 계층 전체를 어떻게 통칭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있다. 다만 본고는 편의상 현재 국내외 학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上三旗 包衣(dergi ilan gūsai booī niyalma)”⁹⁾를 사용하기로 한다.

황제의 私屬 인정인 상삼기의 包衣들은 농업, 과수업, 목축업, 수공업, 광업, 염업, 수렵·채집업, 상업 등 다양한 직업에 근무하면서 황실에 재화를 납부하고 서비스를 공급했다. 여러 직업을 가진 包衣 인정 중에 수렵·채집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가리켜 牲丁(buthai haha)¹⁰⁾이라고 통칭했고, 다시 생정 중에서 벌꿀을 납부하는 것이 의무로 부과된 자들을 특정하여 “벌꿀을 채집하는 인정(hibsu butara haha)” 혹은 “蜜戶”라고 불렀다.(이하 蜜戶로 통칭) 모든 밀호는 “正히 납부해야 할 額數의 貢物(jingkini afabuci acara ton i alban)”의 벌꿀을 매해 황실에 납부했다. 이들은 지정된 差役(alban) 외에 다른 업무에 동원되거나 군대에 차출되지 않고 근로 조건을 보장 받았지만, 그 대신 납부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鞭刑을 받거나 부족분을 “은으로 환산(menggun salibumbi, 折銀)”하여 대납했다.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역에

9) 杜家驥나 祺美琴, 博克東, 賴惠敏 등 內務府를 연구한 여러 선대 연구자들은 ‘包衣旗人’으로 지칭되는 신분 집단을 가리켜 “八旗의 包衣 조직, 즉 包衣佐領(booī niru)과 管領(booī da 또는 hontoho)의 아래에 편제된 인원”으로 정의한다. 청대 包衣旗人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비교적 최신까지의 연구사 정리는 李文益, 2019, 『清前期包衣牛鼻組織研究』, 方志出版社, 2-12쪽 참고.

10) 황실 소유의 상삼기 包衣 牲丁 외에 王公이 소유하는 下五旗에도 包衣 생정이 편성되어 있었다. 打牲烏拉에 거주한 下五旗 牲丁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드물지만 包衣가 아닌 팔기 외니루 소속의 생정도 일부 존재했다. 다만 본고의 조사 범위에 한하여 包衣가 아닌 외니루 생정은 布特哈八旗에서 초피를 공납한 牲丁 집단이 유일하다.

서 해제(bithe sumbi)”되면 형제나 자식이 차역을 세습했고, 세습할 가족이 없을 경우 기존의 밀호는 소멸하고 다른 閑散戶를 밀호로 세워 丁額을 채웠다. 청 황실에 서 소비된 벌꿀은 모두 이들 밀호들이 납부한 분량으로 충당되었다.

벌꿀은 예로부터 만주족의 일상 식습관 뿐 아니라 특히 제사에 반드시 필요한 식재료였으므로 누르하치는 이른 시기부터 자신의 家奴를 동원해 벌꿀을 생산하고 가내의 수요를 충당했다. 이후 만주족이 송화강과 輝發河 일대의 海西女眞 부락을 정복하고, 요동을 정복하여 이주하고, 순치 원년(1644)에 다시 북경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황실은 새로운 이주지와 점령지, 개척지 마다 서로 다른 밀호 집단을 설립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벌꿀을 생산하게 했다. 그 결과 강희 중기에 이르러 황실이 소유한 상삼기 포의 밀호는 지역에 따라 ①盛京의 밀호, ②打牲烏拉의 밀호, ③直隸의 밀호 세 집단으로 분화한다.

세 지역의 밀호는 매해 일정량의 벌꿀을 황실에 납부한다는 점에서 동일했지만, 거주지에 따라 생산 양식과 작업지의 생태 조건이 달랐으므로 집단별로 벌꿀을 생산하는 방식과 납부하는 방식이 달랐다. 또한 시간이 흐르며 자연 환경이 변화하고 만주 원시삼림의 천연꿀이 고갈되며, 황실의 벌꿀 소비 양태 역시 계속 변화했기 때문에 세 집단의 貢蜜은 시대에 따라서도 적잖은 변화를 겪었다. 이하에서는 황실의 벌꿀 생산자인 밀호를 지역에 따라 구분하고, 각 집단별 형성 기원과 벌꿀 납부에 대해 서술하겠다.

1. 盛京의 蜜戶

성경의 밀호는 과거 누르하치 시기부터 汗家를 위해 벌꿀을 생산한 汗의 家奴 집단에서 기원한다. 『滿文老檔』에는 天命 6년(1621) 5월에 “汗家の(han i booi) 일라친이 유능하다 하여 발탁해 備禦의 관직을 주었다. 그러나 벌꿀을 캐러 가서 물이 사남 하느라 벌꿀을 열심히 찾지 않고 벌꿀을 구하지 못했기에 備禦의 관직을 혁직했다.”라는 기록이 있다.¹¹⁾ 이 기사는 汗家(han i boo), 즉 후대의 皇室(dele boo

11) 『滿文老檔』 卷22, 天命 6年 5月, “han i booi ilacin be sain seme tukiyeŋi, beiguwan i hergen buhe bihe, hihsu butame geneŋi abalame yabume, hihsu kiceme baihakū, hihsu bahakū seme

혹은 dergi boo)이 사유 노동력인 包衣 人丁들을 동원하여 家用的 별꿀을 생산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기록이다. 다만 일라친 등이 별꿀을 채집하는 업무에 동원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그때부터 별꿀의 생산에 專業한 法定의 밀호였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매해 황실에 定額의 별꿀을 납부하는 것이 ‘정규(jingkini)’ ‘항목(hacin)’의 ‘차역(alban)’으로 ‘지정(toktobuha)’된 법제화된 신분 계층으로서의 밀호는 누르하치 이후 강희 초기까지 수십 년에 걸쳐 이뤄진 內務府의 성립과 발전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다.

順治 원년(1644)에 순치제가 북경으로 천도했을 때, 요동 각지에 거주하면서 황실을 위해 복무하던 황실 소유의 兩黃旗 包衣 중 상당수가 황제를 따라 관내로 이주하였다. 황제와 그의 가족은 북경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고향에서 생산되는 별꿀을 계속 필요로 했으므로, 내무부는 북경으로 이주한 인원 중 일부를 성경으로 파견하여 별꿀을 채집해 오게 했다. 『盛京內務府順治年間檔』에 따르면 북경에서 성경으로 파견한 밀호는 순치 5년에 57명, 순치 6년에 55명이었으며 총 11개 타탄(tatan)으로 조직되었다.¹²⁾ 매 1丁이 별꿀 3병(malu), 근으로 환산하여 60근(약 30kg)씩의 별꿀을 납부했다. 이들은 비록 북경에 거주했지만 성경 지역에서 별꿀을 생산했으므로 넓은 의미의 성경 밀호에 속한다.

그러나 매해 북경과 성경을 왕복하며 작업하는 것은 비용과 동선의 낭비가 너무 컸고, 거쳐 가는 길가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밀호 본인에게 큰 고생이 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황실은 북경으로 이주하지 않고 관외에 머물러 있던 ‘성경에 잔류한(mukden de weribuhe) 包衣’들로 새로운 밀호 집단을 편성하기 시작했다. 순치 4년(1647), 총관내무부는 사르후성 동쪽의 渾河 북안에 위

beiguwan i hergen be nakabuha.”

12) 타탄은 만주어로 천막이라는 뜻이다. 이 경우에는 같은 천막에서 동숙하며 작업을 다닌 소규모 수렵·채집 조직을 말한다. 타탄의 수명은 ‘타탄-다(tatan i da)’라고 했다. 1개 타탄을 구성하는 인원수는 수렵물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 경우 55~57명의 인원이 11개의 채밀 타탄을 조직했던 것을 보면 약 5명이 1개 타탄을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盛京內務府順治年間檔』 9號 11쪽, 순치 4년 5월 21일; 『盛京內務府順治年間檔』 28號 28-30쪽, 순치 5년 윤4월 16일; 『盛京內務府順治年間檔』 40號 44-45쪽, 순치 6년 5월 20일).

치한 허처무(hecemu)¹³⁾라는 촌락에 거주하며 황실에 목재를 납부하던 200명의 伐木丁(moo sacire haha) 중 34명을 뽑아서 임시로 벌꿀을 채집하게 했다.¹⁴⁾ 그리고 순치 6년(1649)에는 이들의 벌목 차역을 아예 취소하고 200명 전원을 밀호로 전환해 채밀에 전업하게 했다.¹⁵⁾ 좁은 의미에서 말하자면 성경의 거주민으로 편성된 이 200인을 최초의 성경 밀호로 볼 수 있다.

순치 6년에 북경 55명, 성경 200명 총 255명이었던 성경 밀호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康熙 8년(1669)에 북경 288명, 성경 319명 총 607명으로 늘어났다.¹⁶⁾ 이러한 급속한 증가는 순치 8년(1651)에 황실이睿親王 도르곤과 英親王 아지거의 包衣를 몰수하고 正白旗를 황실의 소유로 삼으면서 황속 包衣 인구가 크게 늘어나게 된 사정과 관련이 있다.¹⁷⁾ 물론 반대로 밀호의 정원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강희 14년(1675)에 몽고 차하르부의 부르니(burni, 布爾尼)가 반란을 일으켜 성경 지역을 위협하자 황제는 성경의 세 包衣 니루에서 각각 100-200명씩의 인원을 차출하여 병사로 삼게 했다.¹⁸⁾ 산에서 몇 달씩 노숙하면서 짐승들과 투쟁하는 것이 일상생활인 밀호는 유능한 병력 자원이었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포의 額丁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원이 군대로 차출되었다. 이때 성경 밀호의 3분의 1 정도가 채밀 차역을 중단하고 군대로 동원되면서 잠시간 성경 밀호의 총 인원수가 크게 감소되었다.

이렇듯 시기에 따라 총 인원수에 증감은 있었으나, 북경과 성경에 거주하는 밀호 500~600여명이 공동으로 벌꿀을 생산한다는 큰 틀은 순치 초기에서 강희 초

13) 허처무는 성경에서 撫順을 거쳐 英額邊門으로 연결되는 교통로에 위치한 촌락이다. 누르하치 시기 대명 전선의 주요 거점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허처무 동쪽의 혼하 하원 일대에는 원시 삼림이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의 거주민들에게 벌목의 차역을 부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14) 『盛京內務府順治年間檔』 25號 26쪽. 순치 5년 3월 29일.

15) 『盛京內務府順治年間檔』 45號 46-47쪽. 순치 6년 11월 1일.

16) 『大連圖書館藏清代內務府檔案』 3冊-224, 강희 9년 윤2월 8일.

17) 순치제는 도르곤과 아지거 두 사람이 부트하 올라와 성경 등지에 보유하고 있던 包衣 생정 458명을 몰수하였고 그 중 성경 지역 생정 120명을 밀호로 편제하였다. (『盛京內務府順治年間檔』 59號 60-66쪽, 순치 8년 3월 14일; 『盛京內務府順治年間檔』 66號 75-76쪽, 순치 8년 7월 11일)

18) 강희 14년 부르니의 침입을 대비하여 성경의 상삼기 포의를 징병한 기록은 『黑圖檔-康熙朝』, 12冊-133, 강희 14년 4월 xx일; 『黑圖檔-康熙朝』, 12冊-136, 강희 14년 4월 21일 등을 참조.

기까지 40여 년 간 대체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강희 23년(1684)에 이르러 상기한 비용의 낭비를 이유로 북경에서 성경으로 밀호를 보내는 것을 중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고,¹⁹⁾ 강희 25년(1686) 북경에 거주하는 밀호가 폐지되었다.²⁰⁾ 감원으로 생겨난 결손액은 打牲烏拉에 새로운 밀호를 편제함으로써 대체되었다.(본장 2절에서 상술) 이후 옹정-건륭 초기까지 성경의 밀호는 계속 크고 작은 증감을 반복한 뒤 건륭 6년(1741)에 359명이 되었고²¹⁾ 이 숫자는 광서 말기까지 계속 고정된다.²²⁾(표 1 참고)

순치기에 1인당 60근이었던 납부액은 강희 7년 이후 1인당 50근(약 25kg)으로 하향 조정되었다.²³⁾ 인삼이나 동주 등 내무부의 包衣들이 황실에 납부한 다른 종류의 물산과 마찬가지로 밀호는 정해진 액수보다 많이 납부할 경우 초과분만큼 모청포를 상으로 받았고, 납부액을 채우지 못할 경우 鞭刑을 받거나 부족분을 折銀하여 은으로 대납했다. 내무부의 규정에 따르면 벌꿀 1근을 折銀할 경우 은 2分 5釐(0.025냥)²⁴⁾에 상응했다. 성경의 밀호들은 모두 성경성 또는 인근의 村莊에 산거하면서 매해 1~2회 유조변을 나가 호이파하(hoifa bira, 輝發河) 유역에서 벌꿀을 채집했다. 한번 작업을 떠날 때마다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한 해에 작업한 기간을 모두 합하면 약 3~4개월 정도가 되었다.²⁵⁾ 이들은 황실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물자와 식량을 배급 받는 외에 따로 봉급이나 생계유지 방안을 전혀 지원 받지 않았으므로, 1년 중에 3~4개월은 요역에 종사하고 나머지 기간은 거주

19) 『黑圖檔-康熙朝』, 4冊-81. 강희 23년 5월 3일.

20) 『黑圖檔-康熙朝』, 4冊-226. 강희 25년 3월 20일.

21) 『大連圖書館藏清代內務府檔案』 14冊-441, 건륭 6년 11월 29일.

22) “內務府題本”(臺灣中央研究院), B32 05-074-07, 광서 24년 12월 18일.

23) 『黑圖檔-康熙朝』, 2冊-51, 강희 7년 12월 14일.

24) 내무부의 당안에서 銀의 무게는 기본 단위인 兩 이하 10^{-10} 의 단위까지 표기된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兩(yan), 錢(jiha), 分(fuwen), 釐(eli), 毫(hina), 絲(sunji), 忽(nišen), 微(langju), 纖(luju), 沙(libu), 塵(cudu)이다. 이하 본고는 편의상 소수점을 사용하여 표기하기로 한다.(ex: 1兩 2錢 5分→1.25냥)

25) 성경 밀호의 작업 기간은 이들이 유조변을 출입하기 위해 발급 받은 出邊照票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강희 35년을 예로 들면, 밀호들은 6월 20일에 유조변을 나가서 9월 10일에 복귀했고, 11월 23일에 변문을 다시 나가서 12월 26일에 집으로 돌아왔다.(『黑圖檔-康熙朝』 44冊-320~322, 강희 35년 6월 13일; 『黑圖檔-康熙朝』 44冊-449, 강희 35년 11월 22일)

지에 머물며 각자의 생계를 도모했다.

순치 초기에 성경 밀호가 처음 편성되었을 때만하더라도 총 정원이 50여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성경의 밀호들은 납부액을 그럭저럭 채울 수 있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사이에 밀호의 정원이 600여 명으로 갑자기 늘어나게 되자 한정된 지역에서 매년 3만 근이 넘는 벌꿀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미 순치 초기부터 밀호들이 납부량을 채우지 못하는 ‘欠缺(alban edelembi)’ 현상이 나타났다, 내무부는 밀호가 대납한 은을 가지고 시장에서 벌꿀을 구매하여 부족분을 채웠다.²⁶⁾ 황실은 밀호의 欠缺額을 줄이기 위해 밀호를 인솔하는 관원들에 대한 상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시도했으나²⁷⁾ 채찍을 더 때리고 상을 내린다고 해서 숲속에 없는 벌꿀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다.

여기에 더하여 강희 21년(1682) 이후 그동안 벌꿀의 주요 생산지였던 開原城 인근의 삼림지대가 차츰 圍場으로 구획되고 봉금되었다.²⁸⁾ 밀호들은 이제 입산이 금지된 위장 지대를 멀리 우회하여 호이파강 바로 근처, 혹은 더 멀리 송화강 근처까지 가서 벌꿀을 찾아야만 했다. 한 해에 유조변 밖에서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거주지로부터 작업 지역이 멀어질수록 생산량은 반비례했다. 밀호들의 이러한 어려움은 강희 38년(1699)의 집단 상소문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전에는 가까운 산에 꿀을 채집하는 나무들이 많았으며 4·5월에 유조변을 나가서 꿀벌의 꽃을 찾아 기억해 두고, 가을에 들어가 곧장 꿀을 채집하면 蜜餞을 만드는 시기에 맞춰 납부해 차역이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가까운 산의 나무를 모두 벌목하여 먼 곳으로 찾아 채집하러 가니 기한의 날짜도 한 촉박해졌기에 …(후략)”²⁹⁾

26) 『盛京內務府順治年間檔』 46-47쪽, 순치 6년 11월 1일.

27) 『黑圖檔-康熙朝』, 2冊-121. 강희 9년 3월 26일.

28) 청조는 강희 21년에 처음으로 개원성 동쪽 占河(jan i bira) 일대에 4개의 위장을 설치했고, 이후 위장을 설치한 봉금 구역은 동쪽으로 계속 확장되었다(『黑圖檔-康熙朝』, 25冊-362. 강희 21년 9월 27일).

이렇듯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쳐지면서 강희 중기 이후 성경 밀호의 현물 납부 비율은 전체 응징액의 약 30% 정도로 크게 줄어든 상태가 되었다.^(표 1)

[표 1] 성경 밀호의 벌꼴 납부

년도	丁額(人)	應徵額(斤)	實納額(斤)	欠缺額(斤)	折銀額(兩)
강희 8년	607	26,500	18,340	8160	204
강희 47년	255	12,750	4,090	8660	216.5
강희 51년	278	13,900	4,390	9510	237.75
옹정 5년	329	16,450	4,470	11980	299.5
건륭 6년	359	17,950	4,470	13480	337
건륭 22년	633 ³⁰⁾	20,930	4,470	16460	411.5
건륭 54년	359	17,950	4,470	13480	337
嘉,道,咸,同	359	17,950	4,470	13480	337
광서 24년	359	17,950	4,470	13480	337

*출처: 『大連圖書館藏清代內務府檔案』; 『清宮內務府奏摺檔』; 『內閣滿文題本』(中國第一歷史檔案館); 『內務府都虞司呈稿』(中國第一歷史檔案館); 『內務府題本』(臺灣中央研究院)

*註1: 欠缺額=(應徵額-實納額), 折銀額=(欠缺額×0.025兩)

황실도 성경의 밀호들이 한 해에 채집할 수 있는 천연꿀의 양이 제한적이라는

- 29) 『黑圖檔-康熙朝』, 45冊-70. 강희 38년 5월 23일. “seibeni aniya hancika alin de hibsü gaire moo labdu bime, duin sunja biyade jase be tucifi, hibsui ejen i ilga be baime ejefi, bolori dosime uthai hibsü be gaifi tubihe gidaradem teisulebume benjifi, alban tookaburakū bihe, ere emu udu aniya hancika alin de moo be sacihai gemu wajifi, goro bade baime butame geneme, bilha inenggi geli cinggiya ojoro jakade, …(후략).”
- 30) 건륭 20년대에 성경 밀호는 갑자기 633명으로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내무부는 새롭게 늘어난 인원을 기존의 밀호 359명과 합산하지 않고 “原有採蜜丁/新增採蜜丁”으로 나누어 표기하였으며 시간이 지나며 新增採蜜丁의 수는 조금씩 줄어들다가 건륭 54년에 완전히 소멸하여 결국 359명으로 돌아간다. 또한 총 인원수가 두 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현물로 납부하는 전체 벌꿀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4,470근으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보건대 건륭 20년대에 발생한 밀호의 급증은 모종의 이유로 갑자기 늘어난 포의 노동력에게 마땅한 자세 부과를 찾지 못하여 임시로 채밀정의 수에 집어넣은 것이고, 이들은 은으로 요역을 대납하다가 시간이 지나며 점차 다른 차역으로 이전되어 결국 원래의 숫자인 359명으로 회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륭 20년대에 황실이 갑자기 새로운 노동 인력을 수급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이들이 다른 어느 항목의 차역으로 배정되었는지 등에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大連圖書館藏清代內務府檔案』 14冊-460, 건륭 23년 10월 24일; 『內閣滿文題本』(中國第一歷史檔案館) 02-02-007-000545-0029, 「題鎮都虞司所屬口內外三旗打牲舊丁上年交納鹿膠等項折銀事, 건륭 54년 12월 9일).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옹정 연간 이후가 되면 황실은 밀호들을 다그쳐 현물로 완납하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1년에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현물로 수취하고 나머지는 고정적으로 은으로 수취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위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옹정 5년을 기점으로 성경 밀호의 벌꿀 납부액은 4,470근으로 고정되며 청 말기까지 변화하지 않는다.

황실이 성경의 밀호에게 요구한 최소 수량이 4,470근이었던 까닭은 바로 그만큼이 성경내무부에서 蜜餞(꿀에 절인 과일)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수량이었기 때문이다.³¹⁾ 성경과 廣寧 등지에 설치된 황실 소유의 과수원에서 매해 산사, 앵두, 배 같은 과일을 수확해 보내면, 성경내무부는 꿀에 재어 蜜餞으로 가공해 북경으로 납부했다. 蜜餞은 황족들의 일상적인 간식거리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각종 궁중 연회와 황실의 제사에 반드시 오르는 음식으로 매우 중요했다.³²⁾ 만약 성경에서 蜜餞을 가공할 때 꿀이 부족하면 따로 인력을 동원해 시장에서 구매 하거나 다른 지역의 꿀을 動用해야 하는 등 업무가 번잡해졌으므로, 성경의 밀호는 蜜餞에 들어가는 4,470근 만이라도 현물로 납부하도록 했다.

한편 성경 밀호의 벌꿀 납부가 부진했던 것에는 또 다른 구조적인 이유도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황실은 부족한 벌꿀 1근을 은 0.025냥으로 折銀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입관 직후에 생겨난 이래로 광서 말기까지 약 250년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7세기 즈음의 은 가치나 벌꿀 가격으로는 그러한 계산법이 타당했을지 모르지만 시대가 흐르며 자연히 발생한 물가 상승과 천연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청 초기에 정해진 절은 액수는 지나치게 관대한 것이 되어 버렸다. 예를 들어 건륭 16년(1751)에 성경성의 시장에서 벌꿀은 1근당 0.17냥에서 0.22냥 사이에 거래되었고,³³⁾ 이듬해에 길림의 벌꿀 가격은 1근에 0.24냥까지 치솟았다.³⁴⁾ 건륭 연간에 이미 황실은 시가의 10분의 1 정도인

31) 『黑圖檔-雍正朝』, 3冊-120, 옹정 2년 2월 15일.

32) 황실의 제사와 의례를 담당하는 기관인 掌儀司에서 과수원과 과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총괄했다는 사실이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3) 『琿春副都統衙門檔』, 3冊-2, 건륭 16년 10월 3일.

34) “宮中檔奏摺”(臺灣國立故宮博物院), 故宮027030, 건륭 17년 4월 3일.

저렴한 가격으로 성경 밀호에게 혜택을 주고 있던 셈이다. 건륭 16년에 성경에서 좁쌀이 1두에 0.15냥, 수수는 0.052냥, 콩이 0.063냥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³⁵⁾ 벌꿀 1근을 0.025냥으로 쳐주는 황실의 방침이 얼마나 관대했는지 알 수 있다. 당연히 밀호들의 입장에서는 야생의 삼림에서 목숨을 걸고 천연꿀을 찾아 납부량을 늘리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노동을 해서 은으로 대납하는 편이 더 이득이었다.

황실이 현물 납부액을 늘리는 데 집착하지 않고 관대하게 성경의 밀호들을 대했던 것은 물론 성경 일대의 천연꿀이 더 이상 풍족하지 않으며, 밀호의 자세 저항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컸다. 그러나 그 외에도 황실이 打牲烏拉이나 直隸라는 다른 지역의 밀호로부터 부족한 벌꿀을 채울 수 있다는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주요했다. 이하에서는 황실의 또 다른 천연꿀 납부처인 打牲烏拉에 대해 서술하겠다.

2. 打牲烏拉的 밀호

打牲烏拉는 만주족이 건국 초기에 송화강 강변에 건설한 수렵·채집업의 생산 기지인 打牲烏拉總管衙門(ulai butha be kadalara uheri da i yamen)의 약칭이다.(이하 본 고에서는 성경 지역과 대비하여 ‘울라’로 약칭한다.) 打牲이란 제사의 희생물을 수렵한다는 의미이고, 烏拉는 송화강 지역을 의미한다. 송화강과 우수리강, 흑룡강 지역은 성경 지역 보다 더 풍부한 삼림자원을 갖추고 있었다. 다만 당시 만주족의 근거지인 요동 지역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만주의 귀족들은 매해 그곳까지 생산 인력을 왕복시키기 어려웠다. 이에 汗과 팔기의 王公은 송화강 강변에 새로운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각자의 사유 노동력(즉 포의 인정)을 상주시키며 매해 인삼과 동주, 담비가죽, 철갑상어 같은 물품을 성경 혹은 북경으로 납부하게 했다.³⁶⁾ 이들이 곧

35) “宮中檔滿文朱批奏摺”(中國第一歷史檔案館) 04-02-002-000350-0013, 건륭 16년 8월 10일.

36) 打牲烏拉總管衙門의 형성 과정에 관하여 張琛, 2011, 「打牲烏拉與打牲烏拉衙門的設立」, 中國社會科學院碩士學位論文; 李新宇, 2015, 「“打牲”與打牲烏拉總管衙門研究」, 吉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참고.

후대 打牲烏拉의 上三旗·下五旗의 包衣 牲丁의 기원이다.

강희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벌꿀은 성경 지역에서 대부분 충족되었으므로, 올라의 상삼기 생정들은 인삼이나 동주, 담비가죽 같은 더 희귀하고 비싼 자원을 생산하는 일에 주력했고 벌꿀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인력은 따로 편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것처럼 강희 20년대 이후 성경의 벌꿀 생산량이 급감했고 성경 밀호의 절반은 북경과 성경을 왕복한다는 부담이 있었으므로, 황실은 올라에 밀호를 신설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올라에서 새롭게 밀호로 편성될 노동력은 그즈음 황실이 三藩의 난을 진압하고 藩王들로부터 몰수하여 상삼기의 包衣로 삼은 인원들로 구성되었다. 강희 24년(1685)에 황실은 여섯 차례에 걸쳐 총 229명의 ‘三藩漢人(ilan fudaraka i nikan)’을 올라로 보내 임시로 벌꿀을 채집하게 했고,³⁷⁾ 이듬해에 올라에 정식으로 150명의 밀호가 설치되었다. 올라에 밀호가 설치됨과 동시에 북경에서 성경으로 파견하는 밀호는 폐지되었다.³⁸⁾

송화강 유역은 성경에 비해 생태 환경이 더 잘 보존되어 있었으므로, 올라의 밀호는 성경의 밀호보다 20군이 더 많은 70군의 벌꿀을 납부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올라의 밀호 150명이 납부하는 액수는 총 10,500군이 되었다.³⁹⁾ 올라에서 벌꿀을 생산하기 시작한 이후로 황실의 벌꿀 수입량은 윤택해졌고 성경 밀호들의 부담도 줄었다. 강희 중기 이후 성경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다른 목적으로 삼림이 개발되는 등 생태 환경이 점차 파괴되면서 만주의 천연꿀 생산 중심지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더 멀리 떨어진 길림으로 이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것처럼 청 전기 까지만 하더라도 황실의 벌꿀 소비량이 아주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에서 매해 안정적으로 1만여 근의 벌꿀을 납부하게 되

37) 내무부의 三藩漢人 인구의 흡수 과정과 만주 지역으로의 安插을 다룬 연구는 劉小萌, 2018(1), 「內務府管領中的“尚藩”人口」, 『清史研究』, 1-15쪽; 劉小萌, 2020(6), 「“三藩漢人”與東北管莊」, 『民族研究』, 112-131쪽 등을 참조. 그 중 打牲烏拉으로의 이주에 대해서는 李新宇·劉小萌, 2020(1), 「康熙朝發遣烏拉牲丁考」, 『社會科學戰線』, 259-265쪽 참조.

38) 『黑圖檔-康熙朝』, 4冊-226. 강희 25년 3월 20일.

39) 『欽定總管內務府現行則例』第二種「都虞司」卷2 ‘徵納烏拉蜂蜜松子牲丁錢糧’; 『打牲烏拉志典全書』卷3 「採捕蜂蜜」

자 오히려 창고에 벌꿀이 적체되는 현상이 생겨났다. 이에 황실은 올라의 밀호들이 한 해는 벌꿀을 채집하고 한 해는 인삼을 채집하는 순환 제도를 도입하여 생산량을 조절했고,⁴⁰⁾ 雍正 6년(1728)에 이르러서는 150명의 밀호 중 100명을 삭감하여 인삼을 채집하게 하고, 나머지 50명이 총 3,500근만을 납부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했다.⁴¹⁾ 옹정 6년을 기점으로 이 3500근의 납부액은 광서 말기까지 고정된다.

한편 올라의 밀호들은 비교적 적은 수량의 벌꿀을 납부하는 대신에 白蜜(sanyan hibsu)과 蜜尖(hoto hibsu: 로열젤리), 蜜脾(hitha hibsu: 벌집) 같은 희귀한 부산물을 추가로 납부하기도 했다. 이들은 매해 白蜜·蜜尖·蜜脾 각 12匣씩 총 1,780여 근을 3,500근의 벌꿀과 함께 북경으로 전송했으며, 이것들은 御藥房이나 淸茶房에 수납되어 약재 또는 다른 특수 용도로 사용되었다.⁴²⁾

사실 송화강 지역은 3,500근 보다 더 많은 벌꿀을 납부할 수 있는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만약 황실이 정말로 필요로 했다면 올라의 밀호 숫자를 증설하거나 납부액을 늘려 만주의 천연꿀 생산량을 늘리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가경 연간 이후로 청 황실의 벌꿀 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실은 올라의 납부액을 3,500근에서 더 늘리지 않았다. 이것은 올라의 밀호가 성경의 밀호와 마찬가지로 夫役(beyei alban)을 납부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현물 납부액을 가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로 올라 지역에는 인삼이나 동주, 담비가죽처럼 오로지 만주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더 값비싼 자원이 있다는 점도 중요했다. 올라에서 벌꿀을 생산하는 인력을 한 사람 늘리면 그만큼 동주나 담비가죽, 인삼 등을 채집하는 인력 한 명

40) 『光緒大清會典事例』 卷1215 「內務府46·採捕·納賦」 “강희 52년에 상주한 것을 허락했다. 모든 벌꿀을 채집하는 인정들은 1년은 벌꿀을 채집하고 1년은 인삼을 채집하게 한다.(五十二年奏准, 所有採蜜壯丁, 令一年採蜜, 一年採人蔘.)” 강희 52년의 상주문은 옹정 연간의 총관내무부 제본에 일부가 인용문으로 삽입되어 있다. 『大連圖書館藏清代內務府檔案』 14冊-429, 옹정 5년 6월 20일.

41) 『打牲烏拉志典全書』 卷3 「採捕蜂蜜」

42) 『打牲烏拉志典全書』 卷3 「採捕蜂蜜」; “宮中檔奏摺”(臺灣國立故宮博物院, 故宮133911, 「奏報恭進並蜂蜜陳年差事」, 한풍 11년 12월 20일.

을 줄여야 했다. 즉 고부가가치 상품이 생산되는 올라의 1丁의 노동력의 가치는 성경이나 직예에 비해 기회비용이 더 컸다. 벌꿀은 성경에서도 어느 정도 생산이 되었고 후술하듯이 만주에서만 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황실은 올라의 생정들이 더 비싼 특산품을 생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고 부족한 벌꿀은 또 다른 납부처인 직예 지역에서 보충했다. 옹정 6년에 150인의 밀호 중 100인을 삭감하여 인삼을 채집하게 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은 옹정 연간에 이르러 만주 황족들은 이미 ‘만주산 벌꿀(manju hibsu)’과 ‘중국산 벌꿀(nikan hibsu)’에 큰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강희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황실이 만주산 벌꿀과 중국산 벌꿀을 구별하고 양자를 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나타난다.⁴³⁾ 내무부는 만주산 벌꿀이 특히 부족하므로 성경의 벌꿀 생산량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⁴⁴⁾ 그러나 본고의 조사 범위에 한해서 강희 초기를 끝으로 당안 문건과 기타 政書類 문헌에서 황실이 만주산과 중국산 벌꿀을 구별하여 사용한 흔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 황실이 계속하여 벌꿀의 산지를 구별하고 만주산 벌꿀에 특별한 의미를 부과하거나 우대했다면, 후대에 황실의 전체 벌꿀 소비량이 증가하였을 때 만주의 벌꿀 생산량을 늘리려는 시도가 생겨났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옹정 연간 이후로 성경과 올라의 벌꿀 납부량은 계속 4,470근과 3,500근으로 고정되었고, 나머지 부족분은 모두 직예에서 거둬들이는 중국산 벌꿀로 충족되었다.

이렇듯 벌꿀이 오로지 만주에서만 생산되는 물품이 아니었다는 것은 황실의 벌꿀 생산 체계를 거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인삼이나 초피, 동주와 구별되는 벌꿀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황실 벌꿀 수급의 마지막 조절기 역할을 담당한 직예의 밀호를 서술하겠다.

43) 『黑圖檔-康熙朝』 2冊-24, 강희 7년 5월 12일; 『黑圖檔-康熙朝』 2冊-51, 강희 7년 12월 14일.

44) 『黑圖檔-康熙朝』 2冊-121, 강희 9년 3월 26일.

3. 直隸의 밀호

직예의 밀호는 위 두 집단과 전혀 다른 내력과 형성 과정을 가진다. 이들은 순치 원년에 황실이 북경으로 이주한 이후에 직예 각지에서 帶地投充(usin nishai baime jhengge)한 한인들로 조직되었다. 投充(baime jhengge)이란 만주인들이 관내로 이주하여 토지와 인구를 약탈하고 점유하던 혼란한 시기에 직예의 한인들이 만주족 유력자의 비호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분을 의탁한 현상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지투충(혹은 以地投充)은 여러 투충인 중에서도 토지를 소유한 地主 계층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세금 면제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만주인들에게 토지를 바치며 귀부한 사례를 특정하는 용어다.⁴⁵⁾ 당시 황실은 다른 어떤 왕공 대신들보다도 많은 수의 투충 한인과 토지를 겸병했고, 그들을 모두 상삼기로 편제하여 내무부의 관리 아래에서 地租와 賦役을 납부하게 했다. 직예의 투충인은 과거부터 직예 지역에 계속 거주해 왔던 명나라의 유민들이므로 민족 성분상 전원 漢人이며, 팔기 제도상 입관 이후에 팔기로 편제된 新丁(ice hah), 즉 新編漢人(ice dosika nikan)에 속한다. 성경과 올라의 밀호들이 민족을 막론하고 모두 입관 이전에 팔기로 편제된 舊滿洲(fe manju) 혹은 舊漢人(fe nikan)⁴⁶⁾이었던 것과 구별된다.

토지를 가지고 투충한 한인들은 보유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은으로 地租를 납부하는 銀兩莊頭(혹은 納銀莊頭)로 편성되었다. 銀兩莊頭는 順天, 保定, 河間, 永平,

45) 帶地投充에 관한 연구는 趙令志, 2001, 『清前期八旗土地制度研究』, 北京:民族出版社, 124-140쪽; 趙令志, 2002(1), 「論清初畿輔的投充旗地」, 『河北學刊』; 定宜庄·邱源媛, 2016, 『近畿五百里-清代畿輔地區的旗地與莊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6-19쪽; 박민수, 2017, 『清的 入關과 旗人의 北京 移住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5-201쪽 등을 참고.

46) 본고에서 말하는 新·舊의 구분은 팔기의 호적 제도상 인정의 신분을 구분할 때 사용한 기준을 가리킨다. 성경내무부와 打牲烏拉의 人丁檔冊에서는 입관이전에 팔기로 편제된 인원은 민족을 막론하고 모두 ‘舊(陳 또는 佛)라는 접두어를 붙여 구분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打牲烏拉에는 삼변왕으로부터 몰수한 한인 인구가 일부 포함되었고 그들 중에는 과거 요동에서 귀의한 ‘舊漢人(fe nikan)’과 광둥, 운남, 귀주 등지에서 귀의한 ‘新漢人(ice nikan)’이 모두 있었다. 그러나 청말 선통 연간에 간행된 打牲烏拉 人丁冊에 나열된 수 천명의 생정 중 ‘新漢人’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면 과거 打牲烏拉으로 이주된 삼변한인은 모두 ‘舊漢人’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打牲烏拉 팔기 생정의 旗籍과 씨족, 민족 구성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충하고 싶다(打牲烏拉의 人丁冊은 길림성 당안관의 마이크로 필름 스캔본을 참조. 中國吉林省檔案館 藏, 『家譜檔案資料』 第7盤, 2048795; 第8盤, 2048796).

天津, 正定, 宣化 등 직예의 여러 주현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내무부는 그들 가운데 36명을 따로 골라 은을 납부하는 대신 토지 6畝당 벌꿀 5근을 납부하게 했다. 이 36인이 곧 직예 밀호의 기원이다. 벌꿀은 만주 지역 뿐 아니라 중국 내지에서도 생산되었으므로 관내에 벌꿀을 납부하는 인원을 편성해 생산량을 보충하려는 의도였다. 36명의 직예 밀호는 1인당 보유 토지가 1頃에서 13頃까지 서로 달랐고, 이들이 소유한 전체 토지는 총 289頃 63畝 5分이었다(1頃은 100畝).⁴⁷⁾ 따라서 36명의 직예 밀호가 한 해에 납부하는 벌꿀량을 환산하면 24,000근 정도가 된다.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강희 중기에 올라에 밀호를 편성한 이후 벌꿀은 부족이 아니라 과잉이 문제가 됐다. 때문에 황실은 직예 밀호의 납부액을 모두 현물로 징수하지 않았고, 매해 사용할 만큼만 현물로 받고 나머지는 은으로 내게 했다. 이 규정은 옹정 6년에 명문화되었다. “(은량장두) 밀호들이 납부하는 벌꿀은 官三倉에서 총관내무부에 明文하여 넉넉하게 사용한 분량 외에 나머지는 1畝당 은 5分으로 절은하여 廣儲司의 창고로 납부한다.”⁴⁸⁾ 직예의 밀호들은 본래부터 莊園을 소유한 중소 地主 계층이거나 스스로 농사를 짓는 농부이므로 성경이나 올라의 밀호처럼 삼림에서 직접 벌꿀을 채집하지 않았고, (직예의 자연 조건상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았다.) 매해 토지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시장에서 벌꿀을 매입하여 납부했다. 그러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이들은 겉으로는 벌꿀을 현물로 납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은으로 지조를 납부하는 다른 은량장두와 차이가 없었다. 단지 이들이 납부하는 은량을 벌꿀을 구매하는 데 쓰는 것으로 사전에 할당했을 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옹정 연간 이후로 성경에서 납부하는 벌꿀은 4,470근으로 고정되고 올라의 납부량은 3,500근으로 고정되었다. 그 뒤로 광서 연간에 이르기까지 황실의 벌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났지만, 황실은 성경이나 올라의 납부량을 늘리는 대신 직예 밀호의 납부량을 ‘조절’함으로써 수요를 충당했다. 때문에 직예

47) 『光緒大清會典事例』 卷1197, 「內務府28·屯莊2」 ‘三旗銀兩莊頭賦額’. 그러나 『欽定總管內務府現行則例』에는 36명의 밀호가 4702畝 2畝 5分の 토지를 소유했으며 토지 1畝마다 벌꿀 5근을 납부한다고 畝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록했다.

48) 『光緒大清會典事例』 卷1197, 「內務府28·屯莊2」 ‘三旗銀兩莊頭賦額’: “蜜戶所交蜜, 除官三倉呈明足用外, 其餘每畝折銀五分, 徵交廣儲司庫.”

밀호의 현물납/은납의 비중은 당해의 황실 수요에 따라 해마다 편차가 컸다. 건륭기에는 평균 8,000근 내외를 현물로 납부했으나 동치-광서 연간에는 최대 19,000근까지 증가했다.⁴⁹⁾

황실이 이러한 방침을 선택했던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만주족의 부족사회 전통에 기반을 두고 성립되어 팔기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된 성경과 올라의 밀호는 “按丁納賦(haha aname canliyan afabumbi)”,⁵⁰⁾ 즉 사람 한 명당 부세를 납부하는 人頭稅의 수취 대상에 속했다. 때문에 이들이 현물로 납부하는 비중을 늘리면 “가난하고 고생스러운 백성들(joboro yadara urse)”의 身役을 가중하는 격이 되었다. 게다가 만주의 천연꿀은 날이 갈수록 고갈되었기 때문에 납부량을 늘린다고 해서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둘째, 시간이 흐르며 성경과 올라에 거주하는 상삼기 포의 기인은 점차 지역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신분이 되었고, 이것은 조세 저항의 주 원인이 되었다. 관외의 포의 기인은 만주족 출신의 비율이 높았고, 만주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두 입관 이전에 구사와 니루로 편제된 舊丁(fe haha)에 속했다. 황제의 입장에서야 포의 기인들은 과거에 전쟁 포로였거나 죄를 지어 포의 니루로 배속된 ‘비천한 아하(aha)’⁵¹⁾에 불과하지만, 관내로부터 대량으로 유입된 한인 이주민과 비교하면 아득히 높은 正身 기인의 신분이었고, 기인 사회 내부에서 놓고 보더라도 황실 직속의 상삼기 포의는 결코 낮은 계급이 아니었다. “盛世의 滋生人丁에게 영구히 부세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민인에게까지 황제의 관대함을 보여 온 마당에 자신의 권속이나 마찬가지로인 포의들에게 과도한 夫役을 부과할 필요는 없었다.⁵²⁾

49) 『大連圖書館藏清代內務府檔案』 14冊-437(건륭 2년); 14冊-469(건륭 60년); “內務府題本”(臺灣中央研究院) B33 05-136-03(동치 원년); B33 05-175-03(광서 25년)

50) 『嘉慶大清會典』 卷73, 「內務府·都虞司」

51) 내무부의 포의 기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말단 계급의 비천한 사람(dubei jergi fusihūn niyalma)”, “개미와 누에벌레와 같은 말단의 아하(yerhuwe umiyaha adali dubei aha)” 등으로 멸칭하곤 했다.

52) 본고는 이러한 포의 기인들의 상대적 신분 상승과 그로 인한 조세 저항 경향을 청대 중기 이후 황실의 부트하 경영 방식이 포의 인정의 요역 납부에 의존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점차 민인

반면 본래부터 명나라의 조세 제도 아래에 있었던 직예의 밀호들은 “按地納賦(usin aname canliyan afabumbi)”, 즉 소유한 토지의 畝수에 따라 은을 납부하는 대상이며 넓게 보아 地丁銀制의 세계에 속했다. 이들은 현물로 납부하는 비중이 줄거나 늘어도 실제 노동하는 양과 질은 변하지 않았고, 당해에 농업으로 얻은 수익으로 시장에서 구매하는 벌꿀의 수량만 ‘조절’하면 됐다. 현물 납부의 비중을 늘려도 조세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으므로 자연히 조세의 저항이나 회피 경향 역시 낮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황실은 요역 부담자인 성경과 올라 밀호의 벌꿀 생산량은 최소 액수로 동결하고, 해마다 편차가 있는 부족분은 직예의 밀호들이 납부하는 지조은으로 구매하여 수요를 맞추는 방식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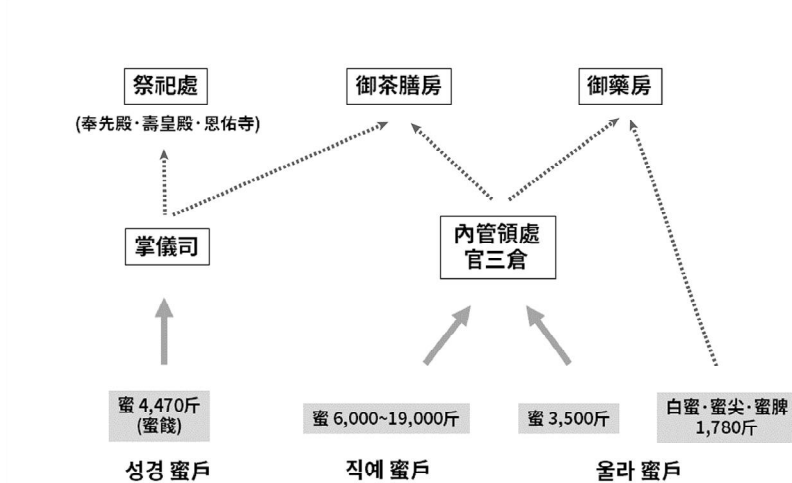
이렇듯 황실은 생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세 지역의 밀호 집단이 처한 서로 다른 생산 조건을 고려하면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벌꿀을 생산했다. 이를 통해 황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벌꿀을 300년 간 끊이지 않게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었다.

III. 황실의 벌꿀 소비

1. 제사 지내기와 먹고 마시기

성경과 올라, 직예의 밀호들이 납부한 벌꿀은 황궁에 도착한 이후 용도에 따라 내무부 속하의 여러 기관에 나누어 수장되고 다시 여러 사용처로 불출되었다. 그 경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을 고용하거나 전량을 지급 받는 팔기 관병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던 여러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한다. 다만 이 주장은 청대 팔기의 부역제도 전반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와 근거가 필요하므로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그림 1] 황실의 벌꿀 수입과 지출 경로

먼저 성경의 밀호들이 생산한 4,470근의 벌꿀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두 蜜餞을 가공하는데 사용되었다. 성경에서 가공한 蜜餞은 황실의 의례와 제사를 총괄하는 기관이자果品의 생산과 소비를 담당하는 기관인 掌儀司에 귀속되었다. 이후 掌儀司는 여러 제사 장소에 蜜餞을 배분하거나 御茶膳房으로 보내서 황실 구성원들의 일상적인 식음에 대비했다.

다음으로 올라와 직예에서 납부하는 벌꿀은 모두 內管領處 소속의 官三倉(ilansiden calu)에 수장되었다. 官三倉은 황실의 식재료 창고 중 하나로 벌꿀 외에 쌀과 잡곡, 소금, 설탕, 밀랍, 식용유, 콩, 참깨 등의 항목을 관리했다.⁵³⁾ 내무부는 매해 여름이 되면 官三倉에서 지난 한 해에 성경과 올라로부터 얼마만큼의 벌꿀을 수령하여 어느 항목에 몇 근을 사용했고, 현재 창고에 남은 벌꿀은 몇 근인지 등의 내역을 題本으로 작성해 황제에게 보고했다. 이때 내무부는 官三倉에서 한 해간 지출한 모든 벌꿀을 다음의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한다.

53) 『欽定總管內務府現行則例』第二種「掌關防管理內管領事務處」卷1「官三倉員役事宜」; 『光緒大清會典事例』卷1193, 「內務府24·供具2」「官三倉供用」

- ① 奉先殿·壽皇殿·恩佑寺 등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바지할 때 사용한 벌꿀
 ② 御膳房, 內管領들이 餽餼桌張을 만들고 御藥房 등에서 사용한 벌꿀⁵⁴⁾

내무부의 구분 방식에 의거한다면, 황실의 벌꿀 소비는 ①‘家祭용 벌꿀’과 ②‘食飲용 벌꿀’로 두 부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금성 내에 위치한 奉先殿은 列聖과 先皇들의 위패를 모시고 기일과 탄신일에 제사를 지낸 사당이고,⁵⁵⁾ 壽皇殿은 景山の 뒤편에 위치하며 선황과 황후들의 聖容(御眞)을 모시고 제사를 지낸 사당이다.⁵⁶⁾ 마지막 恩佑寺는 북경성 서쪽 교외 暢春園과 圓明園의 사이, 지금의 북경대학 서문 건너편에 山門 터만 남아있는 황실 소유의 사찰인데, 강희제가 이곳에서 봉어한 이후 매해 제사를 지냈다.⁵⁷⁾ 물론 이 세 사당은 황실의 제사 장소 중 대표적인 곳이고, 그 외에도 황제와 황후, 비빈들은 坤寧宮이나 安佑宮, 英華殿, 堂子 등 자금성 안팎의 여러 사당에서 크고 작은 제사를 거행하고 얼마간의 벌꿀을 소모했다. 이러한 황실의 家祭에서 벌꿀은 대부분의 경우 밀가루에 버티와 벌꿀을 함께 넣고 구워서 만든 乳餅(sūru)의 형태로 소비되었다.⁵⁸⁾

②에서 언급하는 御膳房과 御藥房은 각각 황실의 음식과 약품을 담당한 기관이

54) 『大連圖書館藏清代內務府檔案』14冊-436, 옹정 13년 6월 27일. 두 구절의 만한 합벽 원문은 다음과 같다. 팔호 안의 만문 표기는 건륭 후기 新清語가 제정된 이후에 변화한 표기 방식을 병기했다.

① fung siyan diyan(nenehe be gingguleme deyen), šeo hūwang diyan(jalfungga deyen), en io sy i jergi bade doboro gung weilere de baitalaha hibsu, 奉先殿·壽皇殿·恩佑寺等處, 成造供用過蜂蜜. ② dergi šan fang(dergi amsu boo), booi dasa efen dere weilere, okto booi jergi bade baitalaha hibsu, 御膳房, 內管領等成造餽餼桌張, 併藥房等處用過蜂蜜.

55) 『光緒大清會典事例』卷1179, 「內務府10·祀典3·奉先殿陳設」; 『欽定總管內務府現行則例』第二種「掌儀司」卷1「奉先殿供品」

56) 『光緒大清會典事例』卷1180, 「內務府11·祀典4·壽皇殿規制」; 『欽定總管內務府現行則例』第二種「掌儀司」卷2「壽皇殿事宜」

57) 건륭 10년을 끝으로 내무부의 벌꿀 소비처 목록에서 恩佑寺의 이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옹정 연간에서 건륭 초기까지만 恩佑寺에서 따로 제사를 지냈고, 그 이후 강희제를 위한 단독 제사는 봉선전 등에 통합·흡수되었던 것 같다.

58) 內務府都虞司呈稿(中國第一歷史檔案館), 05-08-007-000002-0013, 「爲領取嘉慶元年二月份供做獻壽皇殿等處奶餅所需蜂蜜沙糖事」, 가경 원년 2월 15일. 황실 제사에서 사용된 乳餅에 관한 기록은 『欽定總管內務府現行則例』第二種「慶豐司」卷1「成造供獻乳餅」에 자세히 다.

다. 御膳房은 다양한 방식으로 벌꿀을 조리하여 황실의 식탁에 올렸다. 황제의 일상식단을 기록한 常膳單子⁵⁹⁾나 청대 궁정 연회에서 사용된 食譜⁶⁰⁾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御膳房은 벌꿀을 그대로 식탁 위에 내거나 요리의 조미료로 쓰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꿀에 과일을 쥔 蜜餞이나 꿀과 과일을 끓여 졸인 蜜果, 꿀을 넣은 餠餠(efen)의 형태로 벌꿀을 사용했다.

또한 벌꿀은 漢藥과 滿藥에서 모두 중요한 약재로 쓰였기 때문에 御藥房에서도 상당량이 사용되었다. 만주족의 전통 의학에서 벌꿀은 폐와 호흡기를 보양하고 해독 작용이 있다고 여겨졌다. 만주족의 민간 의학에는 뱀에 물린 상처나 화상을 입은 곳에 콩기름과 벌꿀을 섞어 만든 연고를 바르는 요법이 있었다.⁶¹⁾ 궁정의 醫官들은 벌꿀을 첨가한 탕약을 제조하거나 환자에게 몇 스푼의 꿀을 주어 직접 음용하게 했고, 무엇보다도 벌꿀을 달여 수분을 제거한 煉蜜은 분말 제형의 약재를 환약으로 빚거나 연고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첨가제로 반드시 필요했다.⁶²⁾

이렇듯 황실은 벌꿀을 제사와 식음 두 분야로 나누어 사용하였는데, 그렇다면 청대 전시기를 거치며 황실의 벌꿀 소비량은 어떠한 변화를 겪었을까? 강희 55년(1716)부터 광서 24년(1899)까지 약 200년 동안 내무부에서 작성한 연례 보고서를 분석해보면,⁶³⁾ 시대의 흐름에 따라 황실의 연간 총 벌꿀 소비량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특히 제사와 식음 두 부문이 각각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 볼 수 있다.(표 2)

59) 청 황실의 식음 문화를 기록한 방대한 분량의 공문서는 오늘날 중국 제일역사당안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御茶膳房檔”으로 통칭된다. 그중에서도 황제의 조식과 석식 식단을 날짜별로 기록한 문서를 ‘御膳單’ 혹은 ‘常膳單子’라고 한다. 선통 연간의 御膳單 중 일부가 『續修四庫全書』 卷1116에 수록되어 출간되었으므로 열람이 용이하다.

60) 吳正格, 1988, 『滿族食俗與清宮御膳』, 遼寧科學技術出版社; 趙榮光 等, 2003, 『滿漢全席原流考述』, 崑崙出版社.

61) 劉淑雲·宋柏林 主編, 2015, 『中國滿族醫藥』, 中國中醫藥出版社, 359-360쪽 참고.

62) 궁중 의학에서 벌꿀이 사용된 사례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했다. 陳可冀, 1992, 『清宮藥引精華』, 人民衛生出版社; 惲麗梅, 2010, 『清宮醫藥與醫事研究』, 文物出版社.

63) 200년 분량의 보고서가 모두 보존된 것은 아니다. 일부는 『大連圖書館藏清代內務府檔案』에 수록되어 출간되었고, 일부는 제일역사당안관에 소장된 內務府題本에 포함되어 있다. 본고는 총 36년 분량의 보고서를 발굴하였고, 그중에서 다시 13건만을 선별해 표에 담았다.

[표 2] 청 황실의 연간 벌꿀 소비량 변화

년도	총 벌꿀 소비량(斤)	家祭用 벌꿀 소비량(斤)	食飲用 벌꿀 소비량(斤)
강희 54년	3,251	불명	불명
옹정 8년	8,024	불명	불명
옹정 12년	10,133	5,573	4,560
건륭 9년	12,829	7,516	5,313
건륭 24년	13,313	8,088	5,225
건륭 39년	11,539	7,424	4,115
건륭 59년	9,717	7,489	2,228
가경 10년	14,748	446	14,302
가경 23년	14,681	446	14,235
도광 4년	19,559	446	19,113
동치 10년	16,006	324	15,682
광서 10년	18,491	351	18,140
광서 24년	18,554	351	18,203

*출처: 『大連圖書館藏清代內務府檔案』; “內閣滿文題本”(中國第一歷史檔案館); “內務府都虞司呈稿”(中國第一歷史檔案館); “內務府題本”(臺灣中央研究院)

*斤 미만의 단위는 질사

*본고에서 확인한 총 36년 분의 보고서 중에서 궁내에 특별한 喪事나 吉事가 없는 비교적 일상적인 해를 선택하였다.

황실의 연간 총 벌꿀 소비량은 200여 년 동안 약 6배가 증가했다. 강희 말기에는 3천근 정도에 불과했지만 옹정 말기에 이르러 1만근 정도로 소비량이 크게 늘어났고 이후 가경기에 다시 한 차례 크게 증가한 뒤 도광기에는 거의 2만 근에 육박했다. 도광 연간 이후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이 숫자는 광서 말기까지 대체로 비슷하게 유지된다. 시대가 흐를수록 황족 인구가 증가하고, 궁정 의례가 비대해지면서 황실은 점점 더 많은 벌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위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가경기에 발생한 제사용 벌꿀의 급격한 감소다. 건륭기까지는 제사와 식음, 두 용도의 벌꿀이 모두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건륭 말기에 황실은 대체로 7천근 정도의 벌꿀을 제사에 소비했고, 식음용 벌꿀은 그보다 조금 더 적은 4,000~5,000근 정도를 사용했다. 제사에 조금 더 많이 사용되었으나, 두 분야 중에 특별히 어느 한 쪽에 치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가경 연간에 이르러 제사에 사용되는 벌꿀은 400여 근으로 약 95%가 감소하고, 반대로 식음용 벌꿀은 1만4천근 정도로 약 300% 정도가 증가한다. 가경기에 이르러 갑자기 이러한 변화가 생긴 원인이 무엇인지는 밝히기 어렵다. 다만 아무리 황제라고 하더라도 선황의 시기에 확립된 의례나 규정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더군다나 이것은 선황과 황후들을 기리는 엄중한 의례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러한 변화에는 분명 황실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만 가능하다.

물론 황실의 제사에는 벌꿀 외에도 다른 다양한 물품들이 사용되었으므로, 단순히 벌꿀 사용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가경기 이후로 황실 구성원의 선조에 대한 효심이 적어졌다거나 그들이 과거보다 家祭를 덜 중시하게 되었다고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벌꿀이라는 한 항목의 입장에서 본다면 청 후기에 접어들었을 때 벌꿀은 황실 내에서 의례적인 성격이나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되었고, 그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경기에 황실은 제사용 벌꿀을 축소시킨 분량(약 7천근) 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약 1만근)의 벌꿀을 식음 분야에서 늘렸다. 제사용 벌꿀을 축소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황실의 구성원들은 더 많은 벌꿀을 자신들이 직접 먹고 마시는 데에 쓰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이렇듯 청대 전시기에 걸쳐 꾸준히 증가하고, 특히 가경기 이후 급증한 식음용 벌꿀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사용된 것일까? 앞서 밝혔듯이 내무부는 식음용 벌꿀의 대표 소비처를 어선방과 어약방, 그리고 餽餽桌張, 세 곳으로 거론한다. 다만 본고가 생각하기로 어선방과 어약방의 소비층은 대체로 황제와 직계 구성원 등 고정된 인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증가를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쉽게 말해서 황실의 식구가 아무리 늘어나고 그들이 더 많은 벌꿀을 소비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 사람이 먹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餽餽桌張은 궁중 연회에 사용되며 황실 밖의 다수 인원에게 제공되었다. 이런 이유로 본고는 餽餽桌張이 가경기 이후 벌꿀 소비량 증가의 주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하 다음 절에서는 황실이 벌꿀을 소비한 주요 방식인 餽餽桌張에 관해 서술하겠다.

2. 궁중 연회의 餠餠桌(efen dere)

餠餠(efen, 이하 '보보'로 표기)이란 만주족의 전통 식품으로 밀이나 쌀, 찹쌀, 보리, 수수 등으로 만든 떡·빵·과자류를 통칭한다. 불에 구운 것은 燒餅(sobin)이라 부르고, 기다란 모양으로 볶은 강정류는 扁條(leke), 기름에 지진 것은 煎餅(jempin), 국수 가닥 모양으로 빳어 튀긴 파배기류는 饊子(saise) 등으로 세분하기도 한다.⁶⁴⁾

보보는 짬맛, 단맛, 무미 등 종류가 다양하므로 모든 보보에 벌꿀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러나 高麗餅(solho efen: 조선의 약과와 유사), 高麗扁條(solho leke: 조선의 강정과 유사),⁶⁵⁾ 蜂蜜印子(곡물 가루를 꿀에 개어 틀로 찍은 것)처럼 벌꿀이 반드시 들어가는 몇 가지 대표적인 보보가 있었다. 벌꿀이 들어간 보보는 과거 금나라 시절부터 여진인들이 즐겨 먹은 간식이었다. 조선의 문인 유득공은 북송시대의 문헌을 인용하며 여진인들의 茶食 습속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周麟之의 『海陵集』에서 이르기를, “여진인들의 풍속은 茶食을 중요하게 여긴다. 아골타는 건국 초기에 이것을 아주 숭상하여, 꼭 중국의 餅餌와 비슷하게 수십 가지의 종류가 있었다. 큰 쟁반에 몇 척의 높이로 켜켜이 쌓아 올리고 손님을 대접하거나 연회를 하사할 때 사용했다.”라고 했다. 이제야 비로소 茶食이 본래 여진의 습속에서 온 것임을 알겠다. 아골타는 육식을 하는 자인데 이처럼 단 음식을 좋아했다니 참 이상하다. 또 周輝의 『北轅錄』에 따르면, “벌꿀을 밀가루에 섞어 기름에 지지니, 오랑캐들이 매우 귀하게 여겼다.”라고 했다. 이것은 지금 (조선에서) 약과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⁶⁶⁾ (밑줄은 인용자 강조)

64) 『御製增訂清文鑑』卷27, 'efen i hacin': 이훈, 『만한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2017.

65) 만주인들은 벌꿀이 들어가는 보보를 대체로 高麗에서 전래된 것으로 여겼는데, 이러한 인식은 과거 금나라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元代에 편찬된 『居家必用事類全集』에 따르면 여진인들은 찹쌀과 밤, 꿀을 섞고 찌서 만든 떡류의 간식을 '高麗栗糕'라고 불렀다(吳正格, 1988, 앞의 책, 10-14쪽).

66) 『古芸堂筆記』卷4「茶食藥果」“女眞俗重茶食. 阿姑打開國之初, 尤向此品. 若中州餅餌之類, 多至數十種. 用大盤累釘高數尺, 所至供客, 賜宴亦用焉. 始知茶食之出於女眞俗也. 阿姑打自是食肉之人, 顧愛此甜物爲可異. 又按周輝北轅錄, 蜜和麪, 油煎之, 胡甚珍此. 此卽今所稱藥果也.”

만주인들에게 보보는 주식에서부터 간식, 고급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은 식품이었고 황실의 식단에서도 보보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황실의 식음을 책임지는 御茶膳房은 취급하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여섯 종류의 하위 廚房으로 나뉘었는데, 肉房, 乾肉庫, 菜庫, 茶膳房, 酒醋房과 함께 餽餽房이 하나의 독립 주방으로 지정되었다.⁶⁷⁾ 황실의 식탁에서 보보가 어육이나 채소와 동등한 지위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餽餽房은 다시 內餽餽房과 外餽餽房으로 나뉘어, 內房에서는 황제와 황후가 아침저녁으로 먹는 일상적인 보보를 담당했고 外房에서는 황실이 왕공과 대신, 외국의 사신들에게 내리는 연회용·하사용 보보를 담당했다.⁶⁸⁾

청대 궁중에서는 太和殿의 大筵宴을 비롯해 慈寧宮, 保和殿, 正大光明殿, 大政殿, 圓明園 山高水長, 避暑山莊 萬樹園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시기와 목적에 따라 크고 작은 연회가 사시사철 개최되었다.⁶⁹⁾ 만주인들은 궁중 연회에서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보보를 소비했다. 넓은 탁자 위에 여러 종류의 보보를 담은 쟁반을 층층이 쌓아 올려 거대한 잔칫상을 만들고, 그것을 연회 참석자 1인당 한 상, 혹은 2인당 한 상씩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잔칫상에는 蜜餞이나 乾果, 生果 같은 것이 일부 포함되나 대체로 보보가 주류였기 때문에 만주인들은 이러한 연회용 종합 茶食 세트를 가리켜 餽餽桌(efen dere)이라고 불렀다. 餽餽桌은 滿席 연회에 포함된 일련의 코스 요리 중 전반부인 ‘奶茶宴’에서 제공되었다. 보보와 함께 奶茶를 마시고 나면 술과 고기가 차려진 ‘羊酒桌’이 제공되고 본격적인 酒宴이 시작된다.⁷⁰⁾

67) 『光緒大清會典事例』 卷1192, 「內務府23·供具1」

68) 『欽定總管內務府現行則例』 第二種 「掌關防管理內管領事務處」 卷2, 「內餽餽房員役事宜」, 「外餽餽房員役事宜」; 吳正格, 1988, 위의 책, 225-226쪽; 趙贏贏, 2020(9), 「清宮餽餽桌」, 『紫禁城』, 122-130쪽.

69) 청대 筵宴의 제도에 관한 연구는 陳熙遠, 2019, 「天朝大燕—太和殿筵宴位次圖考」,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90期, 125-193쪽을 참조. 구범진은 건륭기에 조선 사신들이 청조의 연회에 참석하게 된 경과를 분석한 논문에서 청조의 궁중 연회를 소개하였다(구범진, 2017, 「1780년대 清朝의 朝鮮 使臣에 대한 接待의 變化」, 『명청사연구』 48, 535-564쪽).

70) 紫禁城雜誌編輯部 編, 2018, 『皇帝大婚』, 故宮出版社, 29쪽.

상계한 복송시대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보를 상 위에 수직으로 높게 쌓아 올려 손님에게 대접하는 풍습은 과거 금나라 때부터 있었던 오래된 문화였다. 조선에도 이와 유사한 高排床의 문화가 있고,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환갑잔치나 돌잔치에 고배상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한반도의 문화와도 상통하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餽餽桌은 수령인의 신분 고하에 따라 내용물이 엄격하게 구분되었고 탁자를 부르는 명칭도 달랐다. 황제와 황후, 태후가 사용하는 것은 ‘大燕桌’(그림 2)이라고 했고, 外藩 몽고의 왕공에게 내리는 것은 ‘班桌’이라고 했으며, 貴妃·妃·嬪·貴人에게 주는 것은 ‘翟鳥桌’, 皇子和 皇子福晉에게 주는 것은 ‘內用桌’이라고 했다. 마지막 등급의 탁자는 ‘跟桌’(그림 4)이라고 하는데, 『대청회전』은 跟桌에 관하여 “황제가 특별히 상을 내리는 용도”라고만 서술할 뿐 수여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지위인지는 명시하지 않는다. 추정컨대 跟桌은 위에 언급되지 않은 비정규적 연회 참석자들, 예컨대 만주족 종실 왕공이나 만한 문무대신, 외국 사신들에게 지급되었던 것 같다.⁷¹⁾



[그림 2] 『臚歡景圖冊』 「慈寧燕喜」에 묘사된
황태후의 大燕桌(故宮博物院 소장)

71) 『光緒大清會典』 卷95, 「掌關防處」.; 『光緒大清會典事例』 卷1192 「內務府23·供具1」 ‘餽餽房備用’.

“회전사례”의 내무부 條에서는 만주의 왕공이나 문무 대신, 외국 사신에 대한 餽餼桌 지급 규정은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으면서, 독특하게도 황제의 大燕桌 바로 다음 등급으로 외번 몽고의 왕공들에게 주는 班桌을 명시한다. 이에 관하여 趙羸羸는 당시 만주 왕공과 대신들, 외국의 사신들도 여러 연회에서 각자의 품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餽餼桌을 수령했지만, 그것들은 ‘황제가 특별히 賞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통 內務府가 아니라 光祿寺가 주관했기 때문에 내무부의 서술에서 제외되었다고 했다.⁷²⁾ 그리고 여기에 유독 외번 몽고 왕공에 대한 규정이 들어 있는 것은, 보통 餽餼桌은 혼례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외번 몽고의 왕공들이 대체로 황제와 인척 관계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⁷³⁾ 외번 몽고 왕공에게 수여된 班桌은 귀빈들의 것보다도 등급이 높았으므로, 아마도 황후의 부친(后父) 같은 지위가 높은 인척에게 수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청 황실이 반드시 외번 몽고의 왕공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째서 내무부의 餽餼桌 규정에 외번 몽고 왕공의 경우만 따로 기록된 것인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餽餼桌과 외번 몽고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의 보충이 필요할 듯하다.



[그림 4] 『光緒大婚禮全圖冊』 「賜宴」. 成婚日の 太和殿 賜宴에서 말석의 入宴大臣(좌)과 외국사신(우)이 받은 跟桌. 그림 4의 班桌과 비교하여 탁자의 비단 장식이 보이지 않는다. 入宴大臣들은 2인이 1장의 탁자를 공유했다.(출처: 故宮博物院 소장)

72) 『光緒大清會典事例』 卷1089, 「光祿寺·筵席」 ‘滿席’.

73) 趙羸羸, 2020, 앞의 논문, 130쪽.



[그림 3] 『光緒大婚禮全圖冊』 「納采宴」에 묘사된
后父(황후의 부친)의 班桌. 광서제의 后父는 서태후의
동생인 여허나라 씨족의 桂祥이다. (출처: 故宮博物院
소장)

위의 여러 그림에서 나타나듯이, 餽餽桌은 크기가 크고 위에 올라가는 음식의 양이 매우 많았다. 황제가 사용한 大燕桌은 탁자의 크기만 해도 가로 약 180cm, 세로 200cm에 달했다.⁷⁴⁾ 그렇게 큰 탁자 위에 보보를 빼곡하게 쌓아 올렸으므로 당연히 많은 수의 보보가 필요했고, 대량의 재료가 한 장의 餽餽桌을 만드는 데에 소모되었다. 『내무부현행칙례』에는 각 종류별 餽餽桌에 어떠한 보보가 몇 개만큼 들어가며, 한 장의 탁자 마다 얼마만큼의 재료가 소모되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한다. 각 등급별 餽餽桌에 들어간 보보의 개수와 벌꿀을 포함한 주요 재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3)

74) 趙羸羸, 2020. 앞의 논문, 125쪽.

[표 3] 연회용 餽餽桌의 등급과 구성

	수여자의 지위	餽餽의 개수와 재료
大燕桌 amba sarin i dere	皇帝, 皇后	11 종류의 餽餽 총 2235개, 별꿀 5근, 밀가루 130근 외
班桌 faidara dere	外藩蒙古王公	11 종류의 餽餽 총 2010개, 白蜂蜜 6근 8냥, 밀가루 120근 외
翟鳥桌 ulhūma niruha dere	貴妃, 妃, 嬪, 貴人	11 종류의 餽餽 총 1715개, 별꿀 2근 1냥 3전, 보릿가루 100근 외
內用桌 dolo baitalara dere	皇子, 皇子福晉	7 종류의 餽餽 총 1175개, 별꿀 2근 1냥 3전, 보릿가루 100근 외
跟卓 dahalara dere	王公·大臣·外國 使臣 등으로 추정	5 종류의 餽餽 총 1015개, 별꿀 2근 14냥 6전, 보릿가루 100근 외

*출처: 『光緒大清會典』 卷95 「掌關防處」.; 『光緒大清會典事例』 卷1192 「內務府23·供具1」 '餽餽房備用'.;
『欽定總管內務府現行則例』 第二種 「掌關防管理內管領事務處」 卷2 '外餽餽房員役事宜'.

*註1: 위 다섯 등급 외에도 각종 祭典에 사용된 餽餽桌의 등급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잠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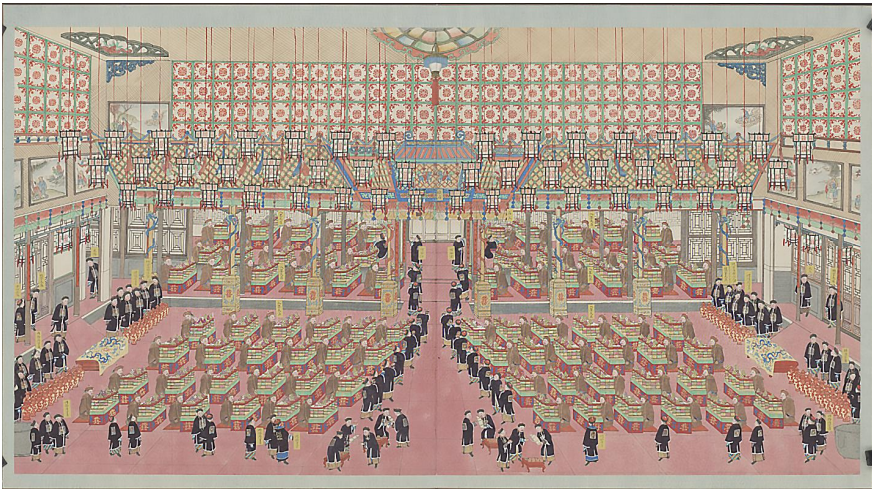
*註2: 餽餽桌의 만문 명칭은 滿文本 『光緒大清會典』을 참고했다.

가장 등급이 낮은 跟卓 한 상에 1천 여 개의 보보가 올라갔던 것을 보면, 餽餽桌은 애초부터 수여자가 연회에서 전부 먹는 용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보다는 형형색색의 보보와 과일들로 화려하게 장식한 餽餽桌을 대전의 안팎에 진열하여 연회의 성대함을 강조하고 吉祥을 비는 목적이 더 강했다.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餽餽桌은 평상시에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본디 중요한 연례행사나 황제나 태후, 황후의 생일 때 연회의 주인공 1인만 상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예컨대 건륭 48년(1783)에 작성된 『節次照常膳底檔』에 따르면, 건륭제는 정월 초하루에 한 번, 그리고 12월 29일에 保和殿의 연회에서 한 번, 총 2번의 餽餽桌을 사용했을 뿐이다.⁷⁵⁾ 태후나 황후 등 황실 구성원 외에 왕공과 문무 대신들에게 餽餽桌을 하사하는 것은 더욱 제한되어 황제의 결혼, 황제·황후·태후의 十旬 생일, 황자와 황손, 증손, 원손들의 결혼식 같은 吉事에서 주로 행해졌다. 또한 연회의 종류나 주인공의 지위에 따라 동원할 수 있는 餽餽桌

75) 『乾隆四十八年節次照常膳底檔』(『清代檔案史料叢編』, 中華書局, 1978, 166-183쪽 수록).

의 개수도 엄격하게 정해졌다. 황제나 그의 자식들이 결혼을 할 때에는 모두 納采日과 成婚日 이틀에 걸쳐 연회가 거행되고 餽餽桌이 제공되었다. 황제는 1회의 연회 때마다 192張의 餽餽桌을 사용했고, 황자는 50張, 황손은 30張, 황증손은 16張, 황원손은 12張을 사용할 수 있었다.⁷⁶⁾



[그림 5] 『大婚禮全圖冊』 「納采宴」에 묘사된 太和殿에서의 餽餽桌 연회 모습 (출처: 故宮博物院 소장)

장수에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흐르며 황실 구성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에 따라 연회를 개최하는 횟수 또한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餽餽桌은 청 황실의 벌꿀 소비량을 꾸준히 증가시킨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황제는 餽餽宴마다 192장의 餽餽桌을 사용했고, (그림 5) 가장 낮은 등급의 탁자 하나에도 벌꿀 2-3근이 들어갔다. 단순 계산으로 따져 보아도 황제가 대형 연회를 한 번 개최할 때마다 500근이 넘는 벌꿀이 사용되었다. 거기에 황제의 가족들이 주인공이 되는 크고 작은 연회들을 합하면 많은 양의 벌꿀이 餽餽桌을 만드는 데에 소비되었다.

76) 『光緒大清會典事例』 卷517, 「禮部228·燕禮3」 ‘大婚禮燕’, ‘皇子·皇孫·皇曾孫·皇元孫婚禮燕’.

IV. 결론

별꿀은 청대 만주의 삼림에서 생산되었던 주요 특산품 가운데 하나로, 예로부터 만주인을 비롯한 동북 여러 민족들의 식생활 및 풍습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청 황실은 과거 국가를 처음 건설했을 당시부터 별꿀을 생산하는 전문 인력인 밀호를 편성하고, 만주의 숲에서 자라는 천연의 목청 별꿀을 생산해왔다. 별꿀은 만주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물산이었으나, 그와 동시에 그것은 청조의 광활한 영토 내에서 만주 지역 말고도 다른 여러 곳에서 생산이 가능한 물품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별꿀은 산지가 극도로 제한된 인삼이나 동주, 초피 같은 만주의 다른 특산품들과는 조금 다른 구석이 있었다. 청 황실이 북경에 정착하고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그들은 만주에서 생산되는 별꿀에만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그보다는 산지를 따지지 않고 자신들이 매해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별꿀을 최대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했다. 이에 청 황실은 성경과 울라, 직예 세 지역에 밀호를 편성하고, 각지의 납부량을 서로 늘리고 줄이기를 반복한 이후에, 옹정 연간에 이르러서는 ‘생산 인력을 과도하게 괴롭히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필요한 수량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별꿀 수급 시스템을 대체로 완성하게 된다.

산지에서 납부된 별꿀이 황궁으로 들어온 이후 황제와 그의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거나 직접 먹고 마시는 일에 많은 양의 별꿀을 사용했다. 청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제사에 사용되는 별꿀의 양이 조금 더 많았다. 그것은 아마도 만주인들이 과거에 별꿀이 귀하던 시절에 제사 같은 특별한 목적이 없이 평상시에 별꿀을 자주 먹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가경기 이후로 황실의 제사용 별꿀 소비량은 급격하게 감소하며, 반대로 식음용 별꿀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사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당시 황실이 무슨 이유와 근거로 이러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증감한 숫자가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은 청 후기에 이르렀을 때 만주의 황족들은 별꿀을 제사에 쓰는 것 보다는, 그저 자신들이 ‘놀이먹는’ 데에 더 쓰고 싶어 했다.

식음용 벌꿀 소비량이 급증하게 된 주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만주 황실의 연회에서 사용된 饔飩桌 문화를 꼽을 수 있다. 饔飩桌은 御膳房, 御藥房과 함께 벌꿀의 삼대 소비처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많은 벌꿀이 들어가는 부문이었다. 饔飩桌이란 넓은 탁자에 보보를 층층이 쌓아 올려 장식한 연회용 茶食의 상차림을 가리킨다. 황제와 황후에서부터 말단의 대신들과 외국 사신에 이르기까지, 각종 연회에 참석하는 인원들은 등급에 따라 구성물이 서로 다른 饔飩桌을 제공 받았다. 등급이 가장 낮은 饔飩桌을 만드는 데에도 적지 않은 양의 벌꿀이 들어갔기 때문에, 연회를 한 번 치를 때마다 많은 양의 벌꿀이 소비되었고, 청 후기 이후 황실의 벌꿀 소비량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1. 고문헌

- 『嘉慶大清會典』
『嘉慶大清會典事例』
『古芸堂筆記』
『光緒大清會典』
『光緒大清會典事例』
『大婚典禮全圖冊』(故宮博物院 藏)
『臚歡薈景圖冊』(故宮博物院 藏)
『滿文老檔』(김주원 외 역주, 2019, 『만문노당 태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御製增訂清文鑑』
『打牲烏拉志典全書』(李澍田 主編, 1988, 『打牲烏拉志典全書·打牲烏拉地方鄉土志』, 吉林文史出版社)
『欽定總管內務府現行則例』(故宮博物院 編, 2000, 南海出版社)
『hesei toktobuha daicing gurun i uheri kooli bithe(光緒大清會典)』
『manjusai wecere metere kooli bithe(滿洲祭神祭天典禮)』

2. 당안

- “宮中檔滿文朱批奏摺”(中國第一歷史檔案館 藏)
“宮中檔奏摺”(臺灣國立故宮博物院 藏)
“內閣滿文題本”(中國第一歷史檔案館 藏)
“內務府都虞司呈稿”(中國第一歷史檔案館 藏)
“內務府題本”(臺灣中央研究院 藏)
『乾隆四十八年節次照常膳底檔』(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1978, 『清代檔案史料叢編』, 中華書局)
『大連圖書館藏清代內務府檔案』(大連圖書館 編, 2010, 國家圖書館出版社)
『宣統二年十二月御膳單』(2002, 『續修四庫全書』 卷1116, 子部·譜錄類, 上海古籍出版社)
『盛京內務府順治年間檔』(滿洲帝國國立中央圖書館籌備處 發行, 1942(康德 9年), 朝鮮印刷株式會社)
『清宮內務府奏鎖檔』(故宮博物院·中國第一歷史檔案館 合編, 2015, 故宮出版社)
『琿春副都統衙門檔』(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中國第一歷史檔案館 合編, 2006, 廣西師範大學出版社)

『黑圖檔-康熙朝』(遼寧省檔案館編·趙煥林 主編, 2017, 繕裝書局)

『黑圖檔-雍正朝』(遼寧省檔案館編·趙煥林 主編, 2016, 繕裝書局)

3. 연구서

修冬 主編, 2006, 『中國東北史』, 吉林文史出版社

李文益, 2019, 『清前期包衣牛氣組織研究』, 方志出版社

吳正格, 1988, 『滿族食俗與清宮御膳』, 遼寧科學技術出版社

劉淑雲·宋柏林 主編, 2015, 『中國滿族醫藥』, 中國中醫藥出版社

紫禁城雜誌編輯部 編, 2018, 『皇帝大婚』, 故宮出版社

定宜庄·邱源媛, 2016, 『近畿五百里-清代畿輔地區的旗地與莊頭』, 中國社會科學出版社

趙令志, 2001, 『清前期八旗土地制度研究』, 北京:民族出版社

趙榮光 等, 2003, 『滿漢全席原流考述』, 崑崙出版社

陳可冀, 1992, 『清宮藥引精華』, 人民衛生出版社

惲麗梅, 2010, 『清宮醫藥與醫事研究』, 文物出版社

이훈, 2017, 『만한사전』,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

4. 논문

葛鳳晨·陳東海, 1993(5), 「十七世紀中國皇家貢蜜生產基地」, 『中國養蜂』

王守剛, 1993(3), 「滿族人的采蜜習俗」, 『蜂蜜雜誌』

歷延芳, 1995(5), 「《打牲烏拉志典全書》與清朝貢蜜」, 『養蜂科技』

劉小萌, 2018(1), 「內務府管領中的“尚藩”人口」, 『清史研究』

劉小萌, 2020(6), 「“三藩漢人”與東北管莊」, 『民族研究』

李新宇, 2015, 「“打牲”與打牲烏拉總管衙門研究」, 吉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李新宇, 2021, 「清代打牲烏拉官營采捕研究」, 吉林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李新宇·劉小萌, 2020(1), 「康熙朝發遣烏拉牲丁考」, 『社會科學戰線』

張琛, 2011, 「打牲烏拉與打牲烏拉衙門的設立」, 中國社會科學院碩士學位論文

趙國壯, 2020(3), 「論中國糖業經濟的“明清變革”」, 『社會科學輯刊』

趙令志, 2002(1), 「論清初畿輔的投充旗地」, 『河北學刊』

趙羸羸, 2020(9), 「清宮餽餉桌」, 『紫禁城』

陳熙遠, 2019, 「天朝大燕—太和殿筵宴位次圖考」,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90

구범진, 2017, 「1780년대 清朝의 朝鮮 使臣에 대한 接待의 變化」, 『명청사연구』 48

박민수, 2017, 「淸의 入關과 旗人の 北京 移住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bstract ■

The Manchu Imperial Household and Honey in the Qing Dynasty

: From Tribute Households to the Emperor's Table

Lee, Seungsu (Peki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honey within the Qing imperial household. Whereas ginseng, pearls, and sable furs—long known as the “three treasures of Manchuria”—have been the subject of scholarly attention, honey has been largely overlooked despite its invaluable use as both a daily commodity and a vital element of palace life. In particular, the activities of the *mihu* (蜜戶)—specialized corvée households under the Imperial Household Department responsible for honey production—and the court's patterns of use have remained largely unexplored in systematic research.

To address the gap in research, this paper traces the full journey of honey from its sites of origin to the imperial table, clarifying the systems of production and uses that sustained it. The first section reconstructs the origins, organization, and tributary practices of *mihu* households in Mukden, Butha Ula, and Zhili. The second section turns to consumption, analyzing how honey, once collected at the Imperial Palace in Beijing from various production sites, was used within the imperial household as part of ancestral rituals as well as a staple condiment in everyday foods and beverages. Special attention here is given to the late eighteenth and early nineteenth centuries, when the expansion of the *efen dere* (餽餽桌, “bobo table”) banquet culture under the Jiaqing emperor dramatically increased the culinary demand for honey.

Honey played far more than a culinary role as a “foodstuff” in the Qing imperial households; it linked the culinary with shamanistic rituals, medicinal purposes, and everyday life. Moreover, unlike ginseng, pearls, and furs—commodities often monetized and traded for silver—the Qing imperial households' “liquid

gold” circulated almost exclusively within the palace, revealing a distinct pattern of imperial consumption. By situating honey within the broader network of *butha* industries(布特哈: Hunting and gathering industries practiced in the Manchuria), this research highlights an overlooked aspect of Qing resource management and understanding of material and cultural life in the Manchu court.

Key words: Manchu, Qing Imperial House, honey, mihu(honey tribute households, efen dere(“bobo table”)